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264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19. 7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7. 16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김정윤 의원 외 8인
- 발의일자: 2019. 7. 1.
- 회부일자: 2019. 7. 4.
- 검토기간: 2019. 7. 5. ~ 2019. 7. 12.

2. 개정이유

-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청정 지역을 추가하고,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청소년 클린판매점’ 용어 정의 추가(안 제2조제4호)
- 나. 음주청정지역 지정 장소로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(안 제4조제1항제2호~제3호)
- 다. 종전 청소년 보호 조항을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으로 변경(안 제5조)

4. 관계 법령
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

5. 검토의견

- 동 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폐해, 특히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청소년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.
- 그 주요 내용을 보면,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음주청정지역(제4조)의 대상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**생활권공원**에 더하여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는 한편,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모범 업소를 새로이 “**청소년 클린판매점**”으로 규정(안 제2조제4호)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알림 ‘표지’(안 제5조)를 설치토록 규정.
- 따라서 동 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전한 음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토록 관련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【별첨】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19. 7. 1.

2. 발 의 자: 김정운 의원 등 9명(박종길, 배지훈, 이성순, 김귀화, 안태국, 김태형, 김화덕, 윤권근)

3. 제안이유

-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청정지역 추가
-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

4. 주요내용

- ‘청소년 클린판매점’ 용어 정의 추가(안 제2조제4호)
- 음주청정지역 지정 장소로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과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(안 제4조제1항제2호~제3호)
- 종전 청소년 보호 조항을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조항으로 변경(안 제5조)

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청소년 클린판매점 및 음주청정지역 추가 지정 등 관련 사항을 폭넓게 정의하여 청소년 음주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조장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 이견 없음.

7. 수정내용

조례안	수정(안)	사 유
	해당 없음	

[관계법령]

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(이하 "학교경계등"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2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
② ~ ⑤ (생략)

□ 도로교통법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
② ~ ③ (생략)